

탄소인력양성사업단 규정

(제정 2012. 7.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북도가 시행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전담하여 추진하는 「전략산업분야 취업 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전문지식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탄소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주대학교 공과대학 부설 탄소인력양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조직과 구성원에 적용된다.

제3조(사업)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탄소전문 인력양성
2. 탄소관련 연구개발
3. 탄소산업 네트워크 구축
4. 탄소산업 관련 기업의 산업화 지원
5. 그 밖에 사업단의 업무에 관련된 사항

제 2 장 조 직

제4조(사업단장) ① 사업단에는 사업단장을 둔다.

② 사업단장은 전주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단을 대표하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 총괄
2. 사업단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3. 사업 협약, 협약 변경, 협약 해지 등의 추진 총괄
4. 사업단 실적보고서 작성 총괄
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총괄

제5조(행정지원) 사업단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제 3 장 위 원 회

제6조(사업추진운영위원회) ① 사업단 운영에 관한 현황 보고 및 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운영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단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2-27-2 탄소인력양성사업단 규정

2. 사업계획서 등 주요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4. 참여기관 간 계약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
5. 기술개발과제 선정, 연구 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된다.
- ④ 위원은 사업단 소속 교수 3명, 공과대학장, 교무처장, 기획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참여업체 대표, 탄소관련 관계인사 중에서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⑥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단 행정직원으로 한다.
- ⑦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사업실무운영위원회) ① 사업단의 주요사업과 관련된 실무 협의를 위하여 사업실무운영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탄소전문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2.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세부사업 및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
4. 대응투자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단의 필요에 의해 사업단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된다.
- ④ 위원은 사업단 소속 교수 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산·학·연 관계자 중에서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⑥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단 행정직원으로 한다.
- ⑦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사업단의 사업 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
2. 그 밖에 전담기관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되고, 위원은 사업단 소속 교수 전원, 교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 ⑤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단 행정직원으로 한다.

⑥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재정 및 회계

제9조(사업연도) 본 사업단의 회계 연도는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의 사업연도에 따른다.

제10조(재정) 본 사업단의 재정은 국고지원금, 학교대응자금, 이자수입,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규정은 취업 연계형 특성화과정 사업의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